

한·인도 CEPA 활용하기!

한·인도 CEPA 활용하기!

Contents



I. 특혜관세 대상 품목이 대폭 확대됩니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PA는 FTA와 무엇이 다르나요? • 협정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없어지나요? • CEPA와 APTA중 어느 쪽을 적용하나요? • 개성공단 생산물품도 특혜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II. 특혜관세를 적용 받으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수입산 부품을 사용한 물품도 원산지상품이 될 수 있나요? • 부가가치비율은 어떻게 산정 하나요? • 의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III. 지정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어디인가요? •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 서류가 너무 복잡해요! 간단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수 없을까요? 	
IV. 수입물품 협정관세 적용 신청절차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물품 협정관세 적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수입 통관 후에도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확인사항은 무엇인가요? • 원산지 검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V. 관세청의 기업 FTA 지원 정책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관세행정 지원 방향 • 산업별 특화 FTA 비즈니스모델 개발 • 관세사를 통한 FTA 컨설팅 서비스 • FTA 혜택 사전 안내 서비스 • FTA 업무매뉴얼 발간· 배포 • 표준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 해외 진출기업 통관애로 해소 • FTA 활용 홍보 강화 	
VI.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기재요령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기재요령 	
VII. 알아두면 좋은 자료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관련 문의처 • 관세청 FTA 포털 	

I. 특혜관세 대상 품목이 대폭 확대됩니다.

Q CEPA는 FTA와 무엇이 다르나요?

CEPA는 FTA와 무엇이 다르나요?



CEPA는 상품,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FTA라 할 수 있습니다.

- ▶ 한·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는 '08.9.20일 타결되었고, 양국간 정식 서명('09.8.7) 및 국회 비준('09.11.6)을 거쳐 '10.1.1일부터 발효됩니다.
- ▶ FTA(자유무역협정)가 무역자유화를 강조하는 협정이라면, CEPA는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입니다.
- ▶ 우리의 對인도 수출 중 85%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한·인도 CEPA 관세철폐 또는 인하를 통해 중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경쟁국보다 한 발 앞서 인도 시장 선점이 가능합니다.

아, 한·인도 CEPA 발효가 기대 되네...



인도는 세계 2위 인구(11.5억명)와 세계 4위의 거대 소비 시장입니다.



Q 협정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없어지나요?

협정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즉시 철폐되는 품목도 있지만, 품목별 관세철폐 일정이 다양하므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등 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 협정 발효와 동시에 우리의 對인도 수출액 기준으로 75%는 발효즉시~8년간 관세를 철폐되고, 10%는 8년 또는 10년간에 걸쳐 관세가 인하됩니다. (품목수 기준 : 72%는 관세철폐, 13%는 관세인하)
- ▶ 예를 들어, 합성수지의 경우 5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어 이행 4년차(2014년)부터는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 ▶ 對인도 수입의 경우 품목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대해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됩니다.
 - ※ 품목별협정 관세율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양국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 : 관세율

양허유형	인도측	우리측
즉시철폐	무선통신기기부품(0~12.5), 비디오카메라(0~12.5), 냉방기부품(0~12.5)	나프타(1), 석유화학제품(3~8), 선철(2), 폴리카보네이트(6.5~8)
5년 철폐	신문용지(12.5), 합성고무(10~12.5, SBR), 의료용 전자기기(12.5), 합성수지(12.5), TV영상모니터(12.5) 등	원유(5), 윤활유(7~8), 20톤 초과 화물자동차(10), 대리석(8), 초음파 영상진단기기(8), 견방사(8) 등
8년 철폐	선박(12.5), 볼베어링(12.5), 건설중장비(0~12.5), 카메라(12.5) 등	페니실린(6.5~8), 모사(8), 동괴(5), 비공업용 다이아몬드(5), 엑스선관(8) 등
8년내 1~5%로 인하	엔진결합발전기(12.5), 기타 자동차용 부품(12.5), 자동차 카스테레오(12.5) 등	자동차 휘발유(5) 등
8/10년내 50% 감축*	기어박스(12.5), 접착제(12.5), 냉장고(200리터 이하, 12.5) 등	훈방면사(8), 배전 및 제어기 부품(8) 등
양허제외	TV음극선관(12.5), 승용차(100), 페놀(12.5), 전자레인지(12.5) 등	일부 순면사(8), 경유(5), 등유(5), 제트유(5), 병커유(5) 등

주 : *인도는 10년 내, 한국은 8년 내 50% 감축

Q CEPA와 APTA중 어느 쪽을 적용하나요?

CEPA와 APTA 양쪽에서
양허한 물품은
어느 협정을 적용하나요?



수출입업체가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한·인도 CEPA와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는 별개의 협정으로 각각의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합니다.
- ▶ 따라서, 양 협정에서 모두 특혜를 적용한 경우 수출입업체는 보다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물론 각각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정의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세관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APTA (Asia-Pacific Trade Agreement) }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은 아·태지역 무역자유화 및 경제발전 도모를 위해 채택한 협정('06.9.1 발효)입니다.
- ◆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인도, 중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6개국이며, 품목번호 (HS) 6단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608개 품목, 인도는 570개 품목에 대해서 특혜관세가 부여됩니다.

Q 개성공단 생산물품도 특혜를 받을 수 있나요?

개성공단 생산물품도
특혜를 받을 수
있나요?



개성공단 제품도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한·인도 CEPA에서도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에 이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고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대상품목은 개성공단 주요 생산품목인 의류를 포함하여 HS 6단위 기준 108개 품목입니다.
※ 주요 대상품목은 채소·과실의 조제품(20류), 인조 모피제품(43류), 종이류(48류), 인조 스테이플섬유 (55류), 특수직물(58류), 의류(61-63류)이며, 구체적인 품목은 한·인도 CEPA 부록 3-나-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개성공단 생산물품 중 원산지를 인정하는 요건은 당해 제품의 가격 중 비원산지재료비가 40% 이하이고, 동시에 당해 제품의 총 재료비 중 원산지재료비가 60%이상이어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는 세관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개성공단



개성공단 생산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세관에서만
발급받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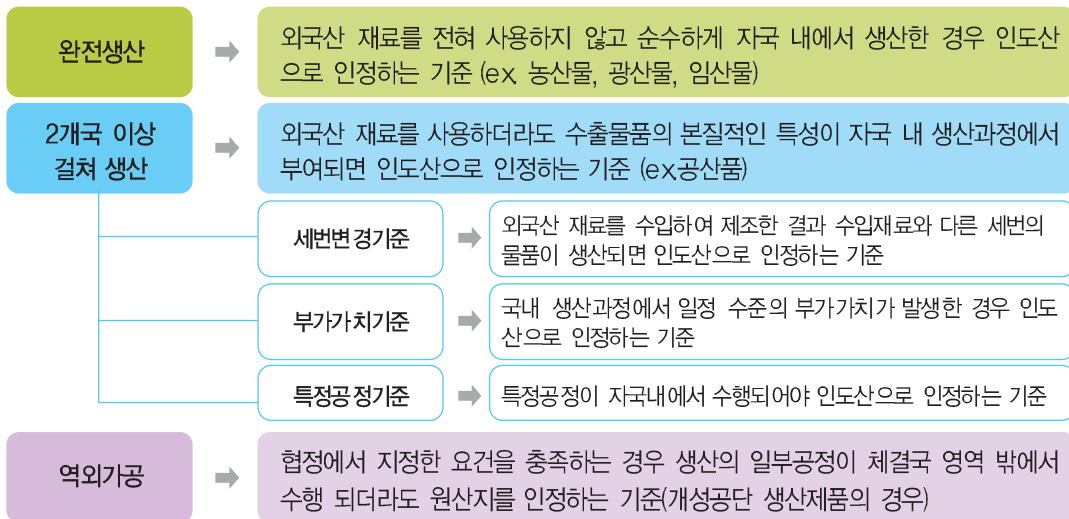
II.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Q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인도産 물품이란 인도의 영역 안에서 생산, 가공, 조립 등의 활동을 통하여 한·인도 CEP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 ▶ 한·인도 CEPA 원산지 규정은 완전생산물품과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으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 ▶ 기본적으로 인도 내에서 생산과정을 거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되,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특정공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결정기준]



Q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 품목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것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통기준'이 적용됩니다.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한·인도 CEPA 부속서 3-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기준' 적용 품목은 부가가치기준 35%이상과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공통기준' 이외에도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일반기준' (예 : 불인정공정기준, 최소허용기준, 누적기준 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예시]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일부 품목(HS 6단위 기준 2,297개)에 대해 품목의 특성과 수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목	구분 (HS,류 : Chapter)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신선 농산물	1-14	완전 생산기준
가공 농수산물	15-24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전자·기계류	84 & 8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역내부가가치 40%기준
화학제품 및 플라스틱류	29 & 39	화학제품 : 4단위 세번변경기준 플라스틱류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역내부가가치기준 40% 기준
섬유 및 의류	50-63	의류 : 2단계 생산공정기준 섬유 :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40%

Q 수입산 부품을 사용한 물품도 원산지상품이 될 수 있나요?



- ▶ 전동기(8501.33)의 경우, 부가가치기준 35%이상과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됩니다.
 - ▶ 아래와 같이 비원산지 재료인 팬과 카본브러쉬의 세번은 각각 8414.59, 8503.10호이고, 전동기는 8501.33호이므로 한국 내 생산과정에서 6단위 세번이 변경되기 때문에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합니다.
 - ▶ 또한 역내 부가가치가 35% 이상이면 전동기는 우리나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어 인도 수출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부가가치 비율 산정방식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류전동기(8501.33)의 세번변경기준 적용]

공급부품		
품명	HS	원산지
정류자	8503.10	인도
마그넷	8503.10	한국
팬	8414.59	중국
카본브러쉬	8503.10	중국

역내산 (정류자, 마그넷)

역외산 (팬, 카본브러쉬)

◆ 세번변경기준 충족기준

팬 및 카본브러쉬 : 8414.59, 8503.10
완제품 : 8501.33

전동기부품(8414.59, 8503.10)을 사용하여 전동기를 생산하는 경우 6단위 소호가 제 8501.33호로 변경되므로 세번변경기준 충족

Q 부가가치비율은 어떻게 산정 하나요?



▶ 부가가치비율 산정 방식 : 공제법

$$\text{부가가치비율} = \frac{\text{FOB가격} - \text{비원산지재료비}}{\text{FOB가격}} \times 100$$

- ▶ 전동기(8501.33)의 경우, 상품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비를 공제한 금액이 상품가격의 35% 이상이면 됩니다.
 - ▶ 아래와 같이 전동기 가격이 1,000\$이고, 비원산지재료인 팬과 카본브러쉬의 가격이 300\$인 경우, 부가가치비율은 70%가 되어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합니다.
- ※ 인도産 정류자(400\$)는 '누적기준'에 의하여 한국産으로 간주됩니다.

[직류전동기(8501.33)의 부가가치기준 적용]

전동기 수출가격(FOB 1,000\$)		
품명	금액(\$)	원산지
정류자	400	인도
마그넷	100	한국
제조비용 등	200	
팬, 카본브러쉬	300	중국
계	1,000	

역내산 (정류자, 마그넷) 700

역외산 (팬, 카본브러쉬) 300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공제법>

$$\text{RVC} = \frac{\text{FOB} - \text{비원산지재료비}}{\text{FOB}} \times 100$$

$$\text{RVC} = \frac{1,000 - 300}{1,000} \times 100 = 70 \text{ (충족)}$$

Ⅲ. 지정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의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의류는 비원산지 원사를 사용한 경우 역내에서 제직하고 재단·봉제하는 2단계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 ▶ 예를 들어, 중국산 아크릴사(HS 5509)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직물(원단)로 제직하고, 재단·봉제하여 의류(HS 6101~6310)를 생산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됩니다.
- ▶ 그러나, 외국산 직물을 수입하여 재단·봉제하는 경우 또는 국산 직물을 사용하였으나 재단·봉제를 외국에서 수행한 경우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남성셔츠



중국산 실을 수입하여 남성셔츠를 만들어도 특혜를 받을 수 있어요!

Q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어디인가요?



- ▶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는 정부 지정기관에서만 발급되며, 우리나라는 세관,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며, 인도는 수출검사위원회(Export Inspection Council)에서 발급합니다.
- ▶ 수출자는 수출시 또는 선적후 7일 이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12개월로서 수입자는 이 기간 안에 수입국 세관에 특혜관세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FTA별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협정	증명방식	증명주체
한·칠레 FTA	지출증명	- 수출자
한·싱가포르 FTA	기관증명	- 싱가포르 : 세관 -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자유무역관리원
한·EFTA FTA	지출증명	- 수출자
한·아세안 FTA	기관증명	- 아세안 : 각국 정부기관 -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한·인도 CEPA	기관증명	- 인도 : 수출검사위원회 -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한·미국 FTA	지출증명	-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Q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



- ▶ 한·인도 CEPA의 원산지증명서는 양국간 통일 증명양식으로 별도의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 FTA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양식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다른 원산지증명서(예 : APTA 원산지증명서) 등을 근거로 한·인도 CEP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 참고로, 한·아세안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뒷면에 OVERLEAF NOTE(기재요령)가 인쇄되지 않으면 불인정되었지만, 한·인도 CEPA의 경우는 OVERLEAF NOTE가 인쇄되지 않아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됩니다.



**Certificate of Origin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Original (Duplicate/Triplicate/Quadruplicate)**

1. Exporter (name, address, country, e-mail address, telephone number, fax number)		Reference No. :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Issued in _____ (Country) _____		
2. Produc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3. Import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5. For Official Use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optional)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6. Remarks		
7. HS Code (6 digit)	8.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9. Gross weight and value (FOB)	10. Origin criterion	11.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3.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issuing authority		
14. □ Third country invoicing(name, address, country)				

Instructions for Completing the Certificate of Origin

- Parties which accept this form for the purpose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nder the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KINCEPA) are REPUBLIC OF KOREA and REPUBLIC OF INDIA.
- CONDITIONS: To enjoy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nder the KINCEPA, goods sent to a Party listed above:
 - must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goods eligible for concessions in the importing Party;
 - must comply with the consignment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5 (Direct Consignment) of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of the KINCEPA; and
 - must comply with the origin criteria in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of the KINCEPA.
- ORIGIN CRITERION: For goods that meet the origin criteria, the exporter must indicate in box 10 of this Certificate of Origin, the origin criteria met, in the manner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Origin Criterion	Insert in box10
(a) Good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WO"
(b) Goods satisfying Article 3.4.1(b) of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of the KINCEPA	"CTSH + RVC 35%"
(c) Goods satisfying the Product Specific Ru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Regional Value Content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or Regional Value Content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Regional Value Content - Specific Processes - Others 	"CC / CTH / CTSH" "RVC X %"hat needs to be met for the good to qualify as originating; e.g. "RVC 35%" "CC / CTH / CTSH" or "RVC X %" "CC / CTH / CTSH + RVC X %" "SP" "Others"
(d) Goods satisfying Article 3.14 of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of the KINCEPA	"OP"

- EACH ARTICLE MUST QUALIFY: It should be noted that all the goods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 separately in their own right. This is of particular relevance when similar articles of different sizes or spare parts are sent.
- DESCRIPTION OF GOODS: The description of goods must be sufficiently detailed to enable the goods to be identified by the customs officers examining them.
- HARMONISED SYSTEM NUMBER: The Harmonised System number shall be a 6 digit code of the goods.
- FOR OFFICIAL USE: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shall indicate in Box5 of this Certificate of Origin whether or not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is accorded.
- REMARKS: In case of issuance of certificates retrospectively, Box6 should be ar the words "ISSUED RETROSPECTIVELY", and in case of a certified true copy, Box6 should bear the words "CERTIFIED TRUE COPY".
- THIRD COUNTRY INVOICING: In cases where invoices are issued by an operator in a third country, the "Third Country Invoicing" box should be ticked [✓] and such information as the name, address and country of the company or the operator issuing the invoice shall be indicated in Box 14.

Note: The instructions hereon are only used for the purposes of reference to complete the Certificate of Origin, and thus do not have to be reproduced or printed in the overleaf page.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을 위한 지침

- 대한민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KINCEPA)에 의한 특혜관세의 목적상, 이 서식을 수용한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인도이다.
- 조건 : KINCEPA의 특혜관세 대우를 받기 위하여는 상기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송부된 상품은,
 - 수입당사국의 양허 받을 자격이 있는 품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 KINCEPA의 제3장(원산지 규정)의 제3.15조(직접운송)에 따른 운송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 KINCEPA의 제3장(원산지 규정)의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원산지 기준 :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상품에 대하여 수출자는 이 원산지증명서 제10란에 해당 원산지 기준을 아래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원산지 기준	제10란에 기입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 또는 생산된 상품	"WO"
(나) KINCEPA 제3장(원산지 규정)의 제3.4조 제1항 나호를 충족하는 상품	"CTSH + RVC 35%"
(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번변경 - 역내가치포함비율 - 세번변경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 세번변경 + 역내가치포함비율 - 특정공정 - 기타 	"CC / CTH / CTSH" 원산지 충족을 위해 필요한 "RVC X%" 예 : "RVC 35%" "CC / CTH / CTSH" or "RVC X %" "CC / CTH / CTSH + RVC X %" "SP" "Others"
(라) KINCEPA 제3장(원산지 규정)의 제3.14조를 충족하는 상품	"OP"

- 각 물품이 요건을 충족할 것 : 운송되는 모든 상품은 각 개별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특히 크기가 다른 유사한 물품 또는 예비부품을 송부하는 때에도 그러하다.
- 품명 : 상품의 명세서는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그 상품을 식별 가능하도록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번호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번호는 상품의 6단위로 한다.
- 담당자 기재란 :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특혜관세대우 부여 여부를 원산지증명서의 제5란에 표시한다.
- 비고 : 증명서를 소급하여 발급하는 경우, 제6란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인증된 진본일 경우, 제6란에 "진정등본"이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 제3국 송장발행 : 제3국의 운영인이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제3국 송장"란에 (✓)로 표시하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 또는 운영인의 이름·주소 및 국가 등의 정보를 제14란에 기재한다.

주 : 이 지침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조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뒷면에 복사되거나 인쇄될 필요는 없다.

Q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지요?



-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FTA 특례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수출신고필증 사본,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원산지 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아울러, 발급 기관 방문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하여 세관, 상공회의소 모두 원산지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확인서류]

구분	확인서류
세번변경기준 물품	-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 *예 :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 책자 등
부가가치기준 물품	-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 *예 :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기타 해당 물품	- 수출용원재료 원산지 확인서,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Q 서류가 너무 복잡해요! 간단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수 없을까요?



- ▶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제하에서 세관장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인증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할 경우 매 신청건별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줄고 발급단계의 원산지 확인절차가 생략되어 신청 즉시 발급됩니다.
- ▶ 다만, 기존 제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협정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한·인도 CEPA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10년 상반기에는 업체별 인증수출자 제도 도입 등 인증수출자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인증수출자 요건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 ◆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자로서,
-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하는 자,
- ◆ 최근 2년간 FTA특례법령 및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 ◆ 최근 2년간 5회 이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이 반려된 사실이 없는 자

IV. 수입물품 협정관세 적용 신청 절차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Q 수입물품 협정관세 적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수입신고 수리전 협정세율 적용신청과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등 두 가지방법이 있습니다.

- ▶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전 협정관세적용신청」 과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적용신청」 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적용신청 방법은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서류로 제출하는 대신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전산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 FTA 확대에 따른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06.3월(한·싱가포르 FTA 이후)부터 협정관세 적용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수입 P/L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적용신청」방법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

Q 수입통관 후에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수입통관 후에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수입신고 수리후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시면, 차액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수입물품이 국내에 도착되어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원산지증명서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시면 차액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리 후 협정관세를 적용받겠다는 의사표시제도가 '09.1월 폐지되어 수입신고시점에서 의사표시 없이도 수입신고 수리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적용신청 시 제출서류]

-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 보정신청서류 또는 경정청구서
- ◆ 원산지증명서 원본
- ◆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자가 원본대조필한 사본에 한함)
- ◆ 원산지확인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Q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확인사항은 무엇인가요?



▶ 원산지조사 등을 통하여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혜관세 적용절차 및 원산지규정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 **거래당사자 요건** : 수출자는 계약상대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제3국인(人)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 제3국인(人)이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제3국 송장" 란에 (✓)로 표시되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 또는 운영인의 이름·주소 및 국가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원산지 요건** : 계약상대국 수출자의 생산시설 존재여부, 생산능력 및 수출실적 등을 파악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직접운송 요건** : 원산지물품이라 하더라도 당사국간 직접 운송되지 않으면 원산지가 부인되는 것으로 다만, 단순환적이나 일시장치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절차 요건**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양식, 인장 등을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순환적 또는 일시장치의 경우 확인 방법]

- ◆ 일차적으로 운송회사가 발행한 운송서류(B/L, 화물운송장 등)에 의해 최초 출항지와 최종목적국(한국)이 계약상대국으로 확인되면 인정
- ◆ 운송서류의 적출국이 계약상대국이 아닌 경우
 - i) 컨테이너 봉인 번호 등 계약상대국으로부터 운송된 물품과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 요건 충족으로 인정
 - ii) i)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단순경유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적인 입증서류(예 : 경유국 세관당국이 발행한 보세구역 반출입 신고서류 또는 보관증 등)를 추가로 징구하여 확인

Q 원산지 검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 원산지 검증제도는 제3국을 통한 우회수입과 관세탈루 방지 등을 위해 원산지의 정확성에 대하여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 ▶ 원산지 검증방법에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수출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직접 검증 방식과 수출국 관세당국을 통하여 수출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원산지를 검증하는 간접검증 방식이 있습니다.
- ▶ 한·인도 CEPA에서는 일차적으로 수출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고, 추가적인 검증 필요 시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현지 방문하여 원산지를 검증하는 「先간접 검증, 後직접 검증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FTA별 원산지 검증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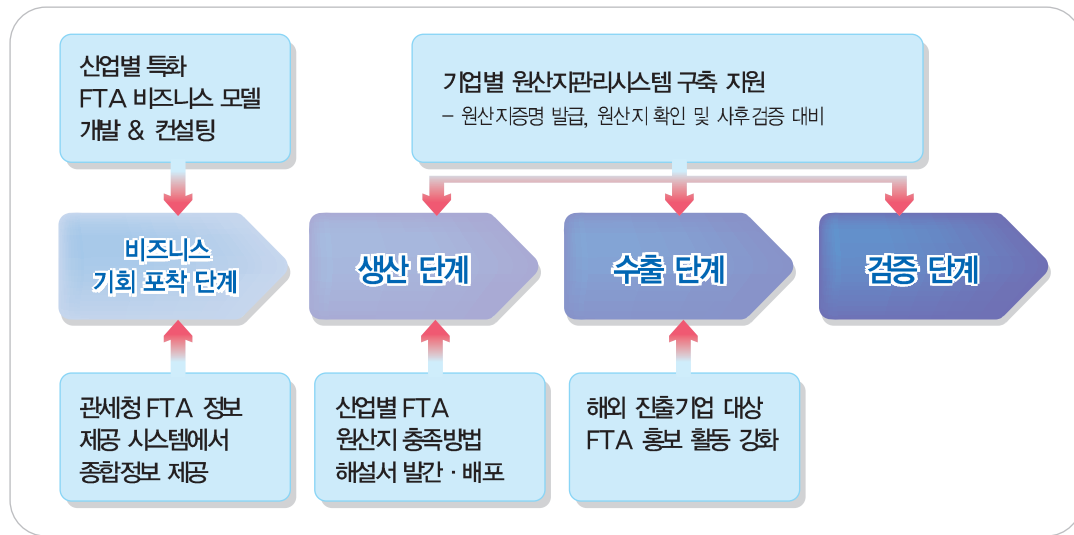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미국
직접검증	직접검증	간접검증 (참관허용)	先 간접검증 後 직접검증	先 간접검증 後 직접검증	직접검증 간접검증*

*섬유에 대한 원산지 검증에서만 인정

V. 관세청의 기업 FTA 기업 지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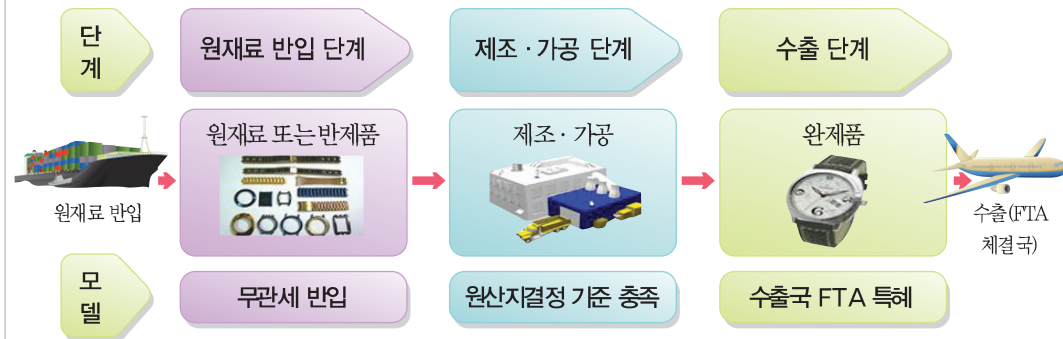
1 FTA 관세행정 지원 방향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新 수출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친화적인 멘토행정(Business-friendly Customs' Mentoring) 전개



2 산업별 특화 FTA 비즈니스모델 개발

▶ FTA별 원산지기준·관세율·통관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원재료 수입단계부터 가공 및 최종제품 수출까지 FTA 혜택을 가장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경로를 보여주는 사업 모델 개발



3 관세사를 통한 FTA 컨설팅 서비스

- 동시다발적 FTA추진에 따른 FTA 무역 비중 지속증가
- FTA 원산지 규정의 복잡 전문화 (스파케티볼 효과)
- 원산지 조사 확대에 따른 권리구제 조력 증가

동 분야 전문가인 관세사를 FTA 컨설턴트로 육성
※ 일정 교육을 이수한 관세사를 컨설턴트로 인증

→ 부품조달에서 완제품 생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FTA무관세 혜택을 연계시키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 최적의 비즈니스 전략 개발 Consulting

4 FTA 혜택 사전 안내 서비스

- 업체의 수출입통관내역, 원산지증명 발급자료를 분석, 수출입업체의 FTA 특혜여부 및 관세절감액 등을 안내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확인 가능

▶ 주요 서비스 내용

- ◆ 수입 : 건별 FTA적용여부, 협정세율, 관세절감액, 원산지기준
- ◆ 수출 : 건별 FTA적용여부, 원산지기준
- ◆ 환급 : FTA 협정관세 찾아주기 캠페인 관련 수입건 확인

5 FTA 업무매뉴얼 발간·배포

- 중소 수출입업체를 중심으로 FTA 업무매뉴얼 「FTA 달인이 되는길, 무대리가 간다」 발간·배포

- ▶ 국민에게 친숙한 만화 주인공인 “무대리” 캐릭터 활용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의 구체적 설명 등 기업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 기업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음
- ▶ 또한, FTA 유망 수출산업인 「LCD 원산지 기준 해설서」 발간하여 기업들의 FTA 활용도 제고



6 표준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 FTA를 활용도를 높이고 원산지 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표준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인력,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부터 보급

- ▶ 기업은 시스템 활용, FTA·원산지 관련 모든 프로세스를 수행



7 해외 진출기업 통관애로 해소

- 현지 진출 우리기업 대상 FTA 설명회(정보제공) 개최 및 현지세관의 자의적 집행에 따른 통관애로 해소

- ▶ 현지 진출기업의 FTA 정보제공 창구 및 분쟁 해결 역할 수행
 - 인도, 동남아 진출 기업 FTA 활용 설명회 등 7개국에서 실시
- ▶ 동남아 진출 의류업체의 원재료인 Duck down 통관을 갑자기 보류하여, 공장 중단 위기 사례 직면
 - ⇒ 인도네시아에 파견(09.1월)된 FTA 관세협력관이 문제 해결

8 FTA 활용 홍보 강화

- FTA 정보 제공, 더 나가 FTA 활용을 위한 붐(Boom)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정보 제공 활동을 전개

- ▶ 한·인도 CEPA 발효 대비 세관별 맞춤형 설명회 개최
 - 8.24~26(3일간), 서울·부산·인천 등 6개 본부세관 실시
- ▶ CEO 대상 동영상 제작 배포
 - 100대 수출입기업 CEO 대상으로 FTA 활용·검증 등 중요성 홍보



VI.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기재요령

신청번호 :		처리기간 : 구비서류란 참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기준별사실신고서 겸용)									
①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발급 <input type="checkbox"/> 재발급() <input type="checkbox"/> 정정발급() <input type="checkbox"/> 소급발급(선적후 발급)								
②신청인	구분	<input type="checkbox"/> 생산자 <input type="checkbox"/> 수출자 <input type="checkbox"/> 관세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							
	상호(대표자)	사업자번호							
③ 원산지인증수출자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	[인증번호 :]							
④적용FTA협정	한- FTA								
⑤수출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E-Mail							
⑥생산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E-Mail							
⑦수입자	상호	대표자							
	주소(국가)	전화번호							
⑧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신고번호(수리일자)		(yy/mm/dd)							
수출신고필증란 번호		금액(FOB\$)							
HS	품명규격	금액(\$)	원산지기준 및 충족여부					부가가치비율 및 비율계산	특혜기준
			완전 생산	역내완전 생산	세번 변경	부가 가치	특정 공정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⑨수입 원재료(국내구입 포함) 내역									
수출신고필증란 번호	HS	품명·규격	금액(\$)		원산지	비고			
			HS별 소계	란 합계					
⑩운송수단/선(편)명	<input type="checkbox"/> 선박 <input type="checkbox"/> 항공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⑪적재항(출항일자)		(yy/mm/dd)				
⑫목적국/항구	/		⑬포장 기호/개수		/				
⑭총 중 량	/		⑮총품장 번호/일자		/				
원산지증명서 특례	<input type="checkbox"/> 제3국 송품장 <input type="checkbox"/> 전 시 <input type="checkbox"/> 연결 원산지증명서 <input type="checkbox"/>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위 내용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업체명 [대표자명] (인) ○○ 세 관 장(○○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 구비서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발급 : 1. 수출신고필증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4. 원산지소명서 5.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증명서 발급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6. 선하증권 사본과 사유서(선적일 30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7. L/C 사본 등 계약서류(원산지증명서 추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한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발급 : 1. 사유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정발급 : 1. 사유서 2. 정정사유 입증자료 3. 원산지증명서 원본 ※ 처리기간 1.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 10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2. 위 제1호 외의 경우 : 3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기재요령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
①신청구분	○ "신규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또는 "소급발급" 중 해당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 재발급, 정정발급 뒤 괄호 안에는 구 신청번호 기재	○ 신규발급의 경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발급 <input type="checkbox"/> 재 발 급 <input type="checkbox"/> 정정발급 <input type="checkbox"/> 선적후 발급
②신청인	○ "생산자", "수출자", "관세사" 또는 "기타" 중 해당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 상호(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를 기재 ○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번호 기재	○ 수출자가 신청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신규발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 발 급 <input type="checkbox"/> 정정발급 <input type="checkbox"/> 선적후 발급 모나리자(주) 112-81-66062
③원산지인증수출자	○ "비해당" 또는 "해당" 중 해당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 해당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 기재 ○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기재	○ 해당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 [지정번호 : 010-07-000001]
④적용FTA 협정	○ 수입국가와 체결된 FTA의 명칭을 기재	한-아세안 FTA
⑤수출자	○ 상호(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를 기재 ○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번호 기재 ○ 주소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 기재 ○ 전화/E-Mail : 발급신청 부서(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신청 부서 공용(또는 담당자) E-Mail	모나리자(주) 112-81-66062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5 02-765-4321 trade@monarisa.com
⑥생산자	○ 상호(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를 기재 ○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번호 기재 ○ 주소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 기재 ○ 전화/E-Mail : 발급신청 부서(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신청 부서 공용(또는 담당자) E-Mail	FTA(주) 112-81-05013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3 02-123-4567/trade@FTA.com
⑦수입자	○ 상호 :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상호 기재 ○ 대표자 :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회사의 대표자 기재 ○ 주소 :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인(applicant) 주소 기재 ○ 전화번호 :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인(applicant) 전화번호 기재	ABC Corporation JOELLE LAU 55 Newton Road #10 Revenue House (Singapore) 65-6337-5996/trade-1@ABC.com
⑧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결정기준	○ 수출신고번호(수리일자) : 수출신고필증상의 ⑤항목의 신고번호, ⑪항목의 신고수리일자 기재 ○ 금액(FOB\$) : 수출신고필증 ④항목의 총신고가격 기재 ○ 수출신고필증란 번호 : 수출신고필증상의 란 번호 기재 (란번호/총란수)	010-10-06-12345678(07/03/01) ○ 미화1만 불인 경우 : 10,000 ○ 총 5란 중 3란 품목의 경우 : 3 / 5

VII. 알아두면 좋은 자료



FTA 관련 문의처

- ▶ **협상 관련**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 02) 2100-8110
- ▶ **법령 관련** : 기획재정부 양자관세협력과 ☎ 02) 2150-8063
- ▶ **통관 관련**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이행팀 ☎ 042) 481-7855
고객지원센터 ☎ 1577-8577 <http://call.customs.go.kr>



관세청 FTA 포탈

<http://fta.customs.go.kr>




▶ 자유무역협정 열린 정보마당

- FTA종합정보 제공으로 기업의 정보수집 비용 절감
-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연계하여 One-Stop 업무처리 체제 구현
- 기업 참여 Contents 마련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FTA 구현

▶ FTA포탈이 제공하는 주요정보

FTA 개요	FTA 개념, FTA 최신정보, FTA 언론보도, 민원 화신사례 등
FTA 추진현황 및 성과	국내외 FTA 추진현황(FTA 체결국 정보 등), 칠레, 싱가포르 등 FTA 체결 성과
FTA 법령 및 통관절차	협정, 법령, 고시, 지침 등 FTA 관련 모든 법규 정보, FTA 수출입 통관 절차, 수입 전 FTA 관세혜택을 알 수 있는 간편세액계산시스템
FTA 비즈니스 모델	추진배경, FTA 비즈니스 모델 소개, 컨설팅 신청
FTA 원산지 증명서	FTA 원산지증명서 안내, 발급절차 및 기재요령, 인터넷 발급절차, 원산지종족 여부 확인 시스템
자료실	알기 쉬운 FTA 용어집, 업무매뉴얼, 원산지 오류사례 등
참여광장	고객지원센터와 연계한 Q&A 서비스, 설문조사(Poll), 건의사항

<p>※ 수출품목의 개수 (수출신고필증상의 란수) 가 총 3개 이상인 경우에는 HS, 품명·규격 및 금액(\$은 기재)을 생략할 수 있음(수출신고필증 사본 제출로 같음)</p>	<p>○ HS: 수입당사국 HS 단위 기재 ○ 품명·규격: 수출신고필증상의 품명·규격 기재 ○ 금액(\$): 수출신고필증 항목의 해당 란 신고가격을 신고 환율로 환산 미화로 기재 ○ 원산지기준 및 충족여부: 해당 수출품목의 원산지결정 기준 모두 선택</p> <p>○ 부가가치비율 및 비율계산: 부가가치 기준 적용품목에 한하여 적용</p> <p>○ 특혜기준: 각각의 FTA 특혜기준에 따라 기재</p>	<p>8211.91 Table knives having fixed blade 1,000</p> <p>○ 세번변경 및 부가가치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p> <table border="1"> <tr> <th colspan="5">원산지기준 및 충족여부</th> </tr> <tr> <th>완전 생산</th> <th>역내 완전 생산</th> <th>세번 변경</th> <th>부가 가치</th> <th>특정 공정</th> </tr> <tr> <td><input type="checkbox"/></td> <td><input type="checkbox"/></td> <td><input checked="" type="checkbox"/></td> <td><input checked="" type="checkbox"/></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able> <p>○ 부가가치 50%기준인 경우 -55% -(\$10,000-\$4,500)/\$10,000</p> <p>○ 완전생산의 경우: WO</p>	원산지기준 및 충족여부					완전 생산	역내 완전 생산	세번 변경	부가 가치	특정 공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원산지기준 및 충족여부																	
완전 생산	역내 완전 생산	세번 변경	부가 가치	특정 공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⑨수입산 원재료(국내구입 포함) 내역</p> <p>※ 수출신고필증 란 번호별로 주요수입원재료 3개를 기재</p>	<p>○ 수출신고필증 란 번호: 수출신고필증상의 란 번호 기재 (란번호/총란수)</p> <p>○ HS: HS 10단위 기재 ○ 품명·규격: 수입신고필증상의 품명·규격 기재 ○ 금액(\$) - HS별 소계: 수입산 원재료별 금액을 기재 - 란 합계: 란별 모든 수입산 원재료 합계 금액을 미화로 기재</p> <p>○ 원산지: 수입산 원재료의 원산지를 기재 ○ 비고: 참고사항 기재</p>	<p>○ 총 5란 중 3란 품목의 경우: 3 / 5</p> <p>7220.20-0000 Flat-rolled product of stainless steel</p> <p>○ 3란 품목에 사용된 수입산 재료비가 미화 500불인 경우: 500 ○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산 재료비 합계가 미화 4,500불인 경우: 4,500 일본</p>															
<p>⑩운송수단 /선(편)명</p>	<p>○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중 해당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 선명 또는 편명 기재</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박 <input type="checkbox"/> 항공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KE 571</p>															
<p>⑪적재항(출항일자)</p>	<p>○ 수출물품의 적재항(또는 적재예정항), 출항일자(또는 출항 예정일) 기재</p>	<p>부산항(06/03/01)</p>															
<p>⑫목적국 /항구</p>	<p>○ 수출물품의 최종목적국 및 항구 기재</p>	<p>○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베트남 하노이 항으로수출되는 경우 - 베트남/하노이항</p>															
<p>⑬포장기호 /개수</p>	<p>○ 수출물품의 포장기호와 포장개수를 기재(포장박스에 기호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 기재 생략)</p>	<p> QTY:100EA / CT NO.1-10</p>															
<p>⑭총중량</p>	<p>○ 수출물품의 총중량 기재</p>	<p>350kg</p>															
<p>⑮송품장번호/일자</p>	<p>○ 송품장상의 송품장 일련번호, 일자 기재</p>	<p>MOC1200 60301001(07/06/01)</p>															
<p>⑯원산지 증명서 특례</p>	<p>○ "제3국 송품장", "전시", "연결 원산지증명서" 또는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중 해당하는 경우 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3국 송품장 <input type="checkbox"/> 전시 <input type="checkbox"/> 연결 원산지증명서 <input type="checkbox"/>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p>															